

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(제10조 관련)

의료기관의 종류	선 임 기 준
종 합 병 원 병 원 치 과 병 원 한 방 병 원 (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) 영 상 의 학 과 전 문 의 원	· 영상의학과 전문의, 의사 또는 치과의사(치과병원만 해당한다) · 이공계(물리, 의공, 전기, 전자, 방사선)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(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이 1년 이상인 사람 ·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치 과 의 원	· 치과의사 · 방사선사 ·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(과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)
의 원 보 건 소 보 건 지 소 그 밖의 기관	의사,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